

의안번호	2201274
의 퇴 인	박홍근의원
회 답 일	2024.7.2.
추계번호	24B15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별표 제3호 가목		부과율		의무규정		
		대상 시설 또는 사업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가.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 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		100분의 20	없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100분의 50	없음
다.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30	없음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별표]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제3호가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 녹지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율을 토지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20으로 하향함에 따라 부담금 수입감소가 예상됨

- 부담금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결정되고, 현행 별표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등에 대해 일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허가 등을 받은 경우	0~130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부과율(0~1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2항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동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제2호1)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추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추계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됨
-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제1호 생략)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2020~2022년

기획재정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9.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12,035	3,751,837	10,794	3,277,610	1,241	474,227	87.4
2022	575	221,994	511	155,841	64	66,153	70.2
2021	605	237,400	430	165,840	175	71,560	69.9
2020	585	190,008	460	134,558	125	55,450	70.8

기획재정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